

장성군의회 공고 제2020-4호

제31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

장성군의회 이태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1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아래와 같이 집회 공고함.

1. 집회일시 : 2020. 2. 4.(화) 11:00
2. 집회장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3. 주요안건

가. 2020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등

2020. 1. 30.

장성군의회의회장 차 상 현

